

학보사 규정

- 제정 : 1984. 05. 01
- 개정 : 1989. 03. 01
- 개정 : 1990. 06. 15
- 개정 : 1998. 05. 21
- 개정 : 2003. 04. 01
- 개정 : 2004. 01. 01
- 개정 : 2006. 08.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정신을 선양하고 대학 언론기관으로서의 건전한 학풍 진작과 대학문화의 창달 및 홍보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대학신문을 발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대학신문의 명칭은 “수원대학보”라 한다.

제3조(소재지) 학보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본사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대판 8면의 “수원대학교”를 매학기당 5회 발행(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본지와 관련되는 학술 및 문화행사

제2장 기구 및 직무

제5조(임원) 본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사장
2. 운영위원
3. 편집인
4. 주간
5. 간사
6. 편집국장
7. 부장

제6조(사장) 사장은 총장이 겸임하며 본지의 발행인으로서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사장이 위임한 범위 내의 업무는 주간이 행한다.

제7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을 약간 명 두되 사장과 교무처장, 기획실장, 학생지원처장 및 주간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주간) ① 주간은 사장의 명을 받아 신문의 편집, 제작 및 학생기자의 제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② 주간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인) ① 편집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② 주간이 편집인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간사는 주간을 보좌하며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② 간사는 사장이 보임한다.

제11조(편집국장) ① 편집국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면하며, 신문의 편집과 제작을 기획, 진행하고 기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② 편집국장은 정기자 중 4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 선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부장) 부장은 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면하며, 편집국장의 지휘, 감독하에 신문의 편집과 제작실무를 진행한다.

제13조(기자) ① 기자는 정기자와 수습기자로 분류하며, 인원은 필요에 따라 주간이 정한다.

② 정기자는 수습기자 중에서 임면하며, 수습기자의 수습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한다.

③ 기자는 소정의 취재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수습기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주간이 선발한다.

제3장 회계

제14조(재정) 운영자금은 학교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예산) 예산은 매 학기 초에 주간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16조(결산) 주간은 매년도 말을 기준일로 그 연도의 결산 안을 회계연도 종료1개월 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8조(해산) 본사가 해산될 때의 그 잔여재산은 본 교에 귀속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